

## 제4회 논산시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고

논산시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1년 3월 22일

논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. 임용분야 및 인원

| 임용분야<br>(근무부서)      | 임용직급               | 선발<br>인원 | 임용기간                   |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관리의사<br>(보건소)       | 지방의무사무관<br>(일반임기제) | 1명       | 임용일로부터<br>2년간<br>주40시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일반진료(예방접종 예진 포함)</li> <li>◦ 채용건강진단 · 일반건강진단 ·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</li> <li>◦ 감염병 대응 · 예방접종 예진, 결핵환자 관리 등 보건사업</li> <li>◦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</li> </ul> |
| 방문의사<br>(보건소)       | 지방의무사무관<br>(일반임기제) | 1명       | 임용일로부터<br>2년간<br>주40시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찾아가는 공동체 건강관리(경로당 순회 방문건강관리)</li> <li>◦ 만성질환 검사 결과 상담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농산물가공지원<br>(농업기술센터) | 지방시간선택제<br>임기제“다”급 | 1명       | 임용일로부터<br>2년간<br>주35시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농산물 가공 지원</li> <li>◦ HACCP시설 인증 관리</li> <li>◦ 농산물 상품화 및 브랜드 관리</li> <li>◦ 농산물 가공창업교육 지원</li> <li>◦ 가공창업법인 및 단체 운영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업무 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## 2. 응시 자격요건

### 가. 공통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주소지, 성별, 연령 : 제한 없음. 단,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 자
- ※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시점에 근무 가능한 자

#### 〈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〉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 나. 자격기준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임용자격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관리의사<br>(일반임기제<br>(지방의무사무관))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법 제5조에 따라 <b>의사면허를 취득</b>하고 의료법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의료법 제66조에 의해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/li> <li>&lt;관련학과 및 실무경력&gt;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관련학과 : 의과대학</li> <li>· 관련분야 실무경력 :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일반진료 및 보건진료 경력</li> </ul> </li> </ul> |
| 방문의사<br>(일반임기제<br>(지방의무사무관))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법 제5조에 따라 <b>의사면허를 취득</b>하고 의료법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의료법 제66조에 의해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/li> <li>&lt;관련학과 및 실무경력&gt;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관련학과 : 의과대학</li> <li>· 관련분야 실무경력 :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일반진료 및 보건진료 경력</li> </ul> </li> </ul> |
| 농산물가공지원<br>(지방시간선택제<br>임기제“다”급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사학위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/li> <li>· 관련분야 실무경력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분야 등에서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 관련 근무경력(<b>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 필히 명시</b>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○ 경력기간 산정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)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. 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제5항)

※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**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** 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
### 3. 보수 수준
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직급별 하한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·자격·경력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

- 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| 상 한 액  | 하 한 액  | 비 고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5급(상당) |        | 61,684 | 별도협의결정 |
| 7급(상당) | 62,675 | 44,514 |        |

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적용

- 시간선택제임기제(주35시간 근무) 공무원의 보수 : 일반임기제공무원 보수  $\times 35/40$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### 4. 시험방법

- 1차시험 :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

※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
- 2차시험 : 면접시험

- 1차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
-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### 5. 시험시행 일정

- 가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1. 4. 5. ~ 4. 7.(3일간)

※ 근무시간(09:00~18:00) 내에 접수하며, 중식시간(12:00~13:00)은 제외

○ 접수처 :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(본관 2층)

※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(내동)
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
- 우편접수는 4. 7.(수) 18:00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.

※ 주소 : 우)32987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

※ 우편접수 응시자는 반송용봉투(응시표 동봉)에 “등기용 우표”를 붙여서  
응시원서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▶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자격검증 동의서 등)은  
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: 2021. 4. 9.(금)예정 (홈페이지 공고)

다. 2차 시험 : 2021. 4. 13.(화) 실시할 예정이나 변경될 수도 있으니 시험일자는  
홈페이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

※ 상기 시험시행일정은 자체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.

## 6. 제출 서류

가.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

나. 응시원서 1부 및 응시수수료

※ 응시수수료 : 논산시 수입증지(5급상당 : 10,000원 6,7급상당 : 7,000원, 8,9급상당 : 5,000원)

-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의 ‘통상환증서’를 동봉하여 주시고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 
따른 수급자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
다. 이력서 1부 및 자기소개서 1부(A4용지 3매이내)

※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 등 관련자료 첨부

라. 직무수행계획서 1부

마.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(원본)

※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, 직책(직급),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고, 발행기관의

관인날인이 명확해야 함. (근무경력기준 : 1일 8시간, 주40시간 단,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  
이 불분명 할 경우 불인정)

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 기재된 경력만 인정됨.

※ 민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근무경력 확인이 가능한 자료 첨부

#### 바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
-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
- 학사이상 졸업증명서 원본 및 학위증서(석,박사) 사본 각1부

#### 사. 임용관련 자격증(면허증) 사본 1부(해당자/원서 제출시 원본 지참)

#### 아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(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)

-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
#### 자. 주민등록 초본 1부(주소이력기재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것)

#### 차. 자격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
#### 카. 기타 이력서에 등재된 내용(연구논문,실적등) 증빙자료(해당자에 한함)

◆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,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을 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합니다.

## 7. 재공고 및 변경공고

-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(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.

※ 재공고시 기 응시자는 재 응시한 것으로 간주함.
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에 논산시 홈페이지( 정책·행정-시정소식-시험/채용)에 공고합니다.

## 8. 최종합격자 결정

-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.

## 9. 기타 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 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.
- 논산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임용신체검사,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,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채용분야 직무관련문의
  - (관리·방문의사)논산시 보건소 보건행정팀(☎041-746-8012)
  - (농산물가공지원)논산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팀(☎041-746-8311)
-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(☎041-746-523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